

○○○수사부대 · 기관
(전화번호)

제 0000-00000 호

0000. 00. 00.

수 신: ○○○ 귀하

제 목: **불입건 결정 통지(진정인 등)**

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접 수 일 시		접 수 번 호	
죄 명			
결 정 종 류	1. 입건전조사 종결 [] 2. 입건전조사 중지 [] 3. 이송 []: 이송관서명(☎:) 4. 공람 후 종결 []		
주 요 내 용			
담 당 수 사 관	☎ 000-0000-0000		

※ (참고)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

-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(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)
 -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
-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(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)
 -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
 - 여성 긴급전화(국번 없이 1366), 아동보호 전문기관(1577-1391) 등
-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(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)
 -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
-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
 -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,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
-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(국번 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·출장소)
 -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(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)
- 범죄피해자지원센터(1577-1295)
 - 피해자나 가족, 유족 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
-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
 - 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
-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
 - www.humanrights.go.kr, 국번 없이 1331

○○○수사부대 · 기관의 장